

釜山直轄市沙下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關한 條例制定理由書

議案番號	185
------	-----

提出年月日：1993. 7. 23

提 出 者：沙下區廳長

☐ 提案理由

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.

☐ 主要骨子

- 가.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
- 나.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
- 다.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
- 라.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
- 마.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
- 바.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 처리에 관한 사항

☐ 關係法令

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

☐ 添 附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(안) 1부.